
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(이인선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666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5. 7.

발 의 자 : 이인선 · 구자근 · 김영식
김은희 · 김용판 · 박대수
백종헌 · 이종성 · 정우택
황보승희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앱 마켓 시장에서 앱 마켓 사업자가 부당하게 자신의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.

그러나 앱 마켓 사업자가 동시에 운영체제를 공급하는 경우, 해당 앱 마켓 사업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앱 마켓 이외에 다른 앱 마켓이나 외부 경로를 통하여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기기에 앱 또는 모바일 콘텐츠 등을 설치하고 이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폐쇄적인 앱 생태계를 구축하는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이를 규제하는 법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.

이에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기본 운영체제를 공급하는 앱 마켓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에 다른 앱 마켓의 설치·이용 또는 다른 앱마켓을 통한 모바일 콘텐츠 등의 설치·이용을

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의 유형 중 하나로 추가함으로써,
앱마켓 생태계 전반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
방지하려는 것임(안 제50조제1항제12호 신설).
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11호”를 “제12호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2. 이동통신단말장치(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부정 이용이 금지되는 단말장치로서 전화번호가 부여된 스마트폰, 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를 말한다)의 기본 운영체제(단말장치에서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수 있는 기반 환경을 말한다)를 공급하는 앱 마켓사업자가 자신의 기본 운영체제 내에서 다른 앱 마켓 또는 모바일콘텐츠 등을 설치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금지하는 행위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0조(금지행위) ① 전기통신사업자(제9호부터 <u>제11호</u> 까지의 경우에는 앱 마켓사업자로 한정한다. 이하 이 조에서는 같다)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(이하 “금지행위”라 한다)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.	제50조(금지행위) ① ----- ----- <u>제12호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11. (생 략)	1. ~ 11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12. 이동통신단말장치(제32조의 4제1항에 따라 부정 이용이 금지되는 단말장치로서 전화 번호가 부여된 스마트폰, 태블릿 PC등 모바일 기기를 말한다)의 기본 운영체제(단말장치에서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수 있는 기반 환경을 말한다)를 공급하는 앱 마켓사업자가 자신의 기본 운영체제 내에서 다른 앱 마켓 또는 모바일콘</u>

② · ③ (생 략)	<u>텐츠 등을 설치하거나 이용하 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금 지하는 행위</u>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-------------	--